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```
제정 1991. 7. 1 조례 제
   개정 1992. 1.14 조례 제 707호
      1992. 10. 9 조례 제 729호
      1994. 1.10 조례 제 805호
      1995. 11. 11
                조례 제 902호
      2000. 5. 17
                조례 제1191호
      2006. 11. 14
                조례 제1470호(제명개정)
      2007. 6. 5
                조례 제1535호
      2008. 6. 16
               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      2009. 3. 2
                조례 제1642호
일부개정 2012. 9.18 조례 제1875호
일부개정 2013. 3.13 조례 제1909호
일부개정 2016. 3.16 조례 제2168호
일부개정 2017. 4.14 조례 제2250호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2539호
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전부개정 2020. 6.19 조례 제2620호
일부개정 2022. 8. 2 조례 제2868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```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2〉
 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 -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.
 -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

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
- 3.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4.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.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
 - 나. 소송당사자와 담합
 - 다. 무성의한 소송수행
 - 라.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
- 제3조(업무 등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
 - 2. 각종 이의신청·행정심판·행정절차에 관한 자문
 - 3.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
 -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,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.
 - ③ 시장은 업무전문성, 유사사건 수행경험,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- 제4조(소송비용·수당)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(조정사건, 중재사건,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비용은 「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」제16조제1항에 따른다.
 -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: 초과 건당 10만원(월 50 만원 이내)
 - 2. 방문·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
 - 가.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: 20만원
 - 나. 3시간 이상: 30만원
 -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

로 본다.

제5조(위촉기간 중 수임사건) 위촉기간이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자문실적부 비치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,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부칙〈2020. 6. 19 조례 제2620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부칙〈2022, 8, 2 조례 제2868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 렴 서 약 서									
□ 소 속: □ 성 명: □ 위촉기간:									
상기 본인은 「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(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)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									
< 군수 사항> 1. 금품수수 금지, 부당한 알선·청탁 금지 2.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.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.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
년 월 일 변호사 (인)									
광명시장 귀하									

(추 1)

[별지 제2호서식]

자 문 실 적 부

일런 번호	변호사	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						자문결과		
		연월일	소 관 부서명	담당자	전화 번호	자문 형식	자문건명	회 신 연월일	회신내용	비고

* 참고사항 : 소송사건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법령해석,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. 자문형식은 문서·면담·전화로 구분한다.